

議會議員區政質問答辯資料

第27回 南區議會 定期會

質問議員	미 남 서 의원	答辯日時	1993. 12. 21. 12:00
質問內容	청소행정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?		

【 答辯內容 】

- 향후 청소행정의 개선대책은 시 전역이 문전수거 체제로 수거·운반 방법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이를 위하여는 환경처에서 시행계획중에 있는 수거로 종량제의 실시와 그에 따른 보완대책등을 검토 연구하여 보완후
- 문전수거에 필요한 인원 장비등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
- 문전수거 실사에 따른 수거로의 인상문제와 쓰레기 신형·집적소 및 압축시설 등을 갖추고 시행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 이간에 맛는 문전수거체계가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議會議員區政質問答辯資料

第27回 南區議會 定期會

質問議員	박 일 서 의원	答辯日時	1993. 12. 21. 12:00
質問內容	<p>조례의 부과기준은 입종간 수수료차이가 있으나 이를 조정하여 우리구에 있는 부과기준을 재정할 용역은 있는가?</p>		

【 答辯內容 】

- 조세성격을 띤 수수료를 인상이나 조정시 지역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
- 현 기준은 배출량, 건물의 성격, 배출물량의 상상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기준이며 사전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조화와 균형을 맞춘 부과기준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차후 어건변동이나 개정을 필요로 할 시,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.

議會議員區政質問答辯資料

第27回 南區議會 定期會

質問議員	마 () 서 의원	答辯日時	1993. 12. 21. 12:00
質問內容	재산세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여부는?		

【 答辯內容 】

-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부과 기준은 91.4.2. 개정한 부산직할시 폐기물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과기준을 변경없이 세정하였으며
- 재산세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상 기준은
재산세액 5,000원 ~ 10,000원 변동이 있을때 폐기물 수수료는 350원~ 500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.
- 이는 부과기준의 이상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산세액의 증가에 따르거나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.

議會議員區政質問答辯資料

第27回 南區議會 定期會

質問議員	박　日　事　 의원	答辯日時	1993. 12. 21. 12:00
質問內容	사수거시 되 대행업체 간의 관계는 ?		

【 答辯內容 】

- 대행업체는 폐기物 관리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며
- 사수거자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배출자 가정에서 청소차까지 운반하여 주는 자로서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적 으로 계약한 자이므로 관에서 규제할 관련법규가 없는 실정이며
- 사수거자는 대행업체 외탁지역 뿐만아니라 구 직인 지역에도 있어, 특별히 사수 거자와 대행업체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議會議員區政質問答辯資料

第27回 南區議會 定期會

質問議員	明　　徳　　市　　議員	答辯日時	1993. 12. 21. 12:00
質問內容	쓰레기 수거, 운반 대행업체의 허가청과 관리청의 일원화로 되어 있으나 중앙에 건의하여 허가청과 관리청이 일원화되도록 중앙에 건의한 용의는 없으시다.		

【答辯內容】

- 쓰레기수집 대행업체의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며,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등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업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.
- 현행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된 쓰레기수집·운반업체 허가권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있는 쓰레기수집·운반업의 허가는 일원화된 것으로 사료되며
- 다만, 시전역의 폐기물처리업체 징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규 허가는 배제되어 있어
- 1993.10. 통합리한 법령의 정비 요청시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 조례 제9조의 징수규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.